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82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4월 26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누락된 글자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함.

2. 주요골자

- 누락된 서술어 등을 기재함(안 제4조제1항).
-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- 위원회 위촉관련 내용의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함(안 제4조제3항제4호).
- 오기된 호 번호를 수정함(안 제4조제4항).
- 부칙의 경과조치를 삭제함(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로 하고

안 제4조제2항 중 “5명 이상, 15명 이하”를 “15명 이내”로 하며

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“각 분야별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”으로 하고

안 제4조제4항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제3항제3호”로 한다.

안 부칙을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<u>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5명 이상, 15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각 분야별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</p> <p>④ 위원장은 <u>제2항제3호</u>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 _____ <u>15명 이내</u>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④ 위원장은 <u>제3항제3호</u>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.</p> <p>⑤ ~ ⑦ (제정안과 같음)</p>
부칙	부칙
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명예부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삭제></p>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위촉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시장 제도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(이하 “명예시장”이라 한다)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명예시장의 위촉,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총괄업무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담당한다.

③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시민소통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, 해당 부서장은 활동사항을 시민소통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임무)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
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주요 정책과정의 참여
3.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
4.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민소통기획관

2. 각 분야별 해당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

3.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시장은 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하며,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을 결정한다.

1.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

2.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,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명예시장의 의무)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7조(명예시장의 해촉)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
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
4.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회의) ①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시장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 명예시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명예시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시장은 명예시장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명예시장은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 임무 수행 시 해당 부서장은 명예시장에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명예시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